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4나5625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서울신용보증재단

피고, 항소인 C

변 론 종결 2015. 6. 23.

판결 선고 2015. 7. 21.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14가단504851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A과 피고 사이에 2012. 12. 15. 김제시 D 전 583평(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A에게 2012. 11.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262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A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고 그 외에도 A이 평택시 E 전 635㎡, 서울 양천구 F외 3필지 G아파트 1421동 1803호, 평택시 H 전 542㎡, 평택시 I 전 803㎡를 갖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평택시H 전 542㎡은 J 앞으로, 평택시 I 전 803㎡는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A이 J, B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2필지 부동산은 A의 적극재산이라 할 수 없다.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기재, 전국은행연합회, 용산전자단지새마을금고, 하남농업협동조합,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은 23,32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와 120,015,000원 상당의 평택시 E 전 635㎡, 500,000,000원 상당의 서울 양천구 F외 3외 3필지 G아파트 1421동 1803호를 소유하여 적극재산으로 합계 643,335,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실,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 43,760,000원 외에 위 평택시 E 토지에 설정된하남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51,449,958원과 용산전자단지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2,000,000원, 위 G아파트 1421동 1803호에 설정된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13,039,924원, 그리고 국민은행에 대한 신용대출채무

295,000,000원 등 합계 765,249,88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의 소극재산(765,249,882원)이 적극재산(643,335,000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 판사 문홍주, 판사 임창현